

# 부 산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07가단162753 손해배상(기)  
원 고 P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 김수정  
피 고 1. D1 (67년생, 남)  
2. D2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D4  
3. D3 (60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웅지  
4. D4 (57년생, 남)  
변 론 종 결 2008. 7. 25.(피고1, 3), 2008. 3. 28.(피고2, 4)  
판 결 선 고 2008. 9.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53,65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회사는 2001. 5. 26. 피고 D4가 대표이사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2. 5. 26.까지로 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 소유의 XXX-26호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1은 2001. 5. 29. 위 선박에 2등 항해사로 승선하였는데, 선장이던 피고 D3이 2001. 9. 24. 아프리카 기니국 영해에서 조업 중이던 위 선박의 조타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엠16 소총을 조작하다가 오발사하여 당시 조타실에서 조타업무를 보고 있던 피고 D1에게 왼쪽 정강이 총알 관통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D3, D4는 피고 D1이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유로, 피고 D3은 피고 D1이 2001. 9. 24. 11:20경 아프리카 기니국 영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그물에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터지는 바람에 그물을 확인하고 있던 피고 D1이 왼쪽 발에 연결체인을 맞고 발목 약 10cm 위쪽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환자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D4에게 제출하고, 피고 D4는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 회사에 피고 D1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하면서 그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피고 D3의 위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피고 D1

은 사고 경위를 묻는 원고 회사 직원에 피고 D3, D4와 미리 의논한 대로 위와 같이 어로작업 중 발생한 사고라고 대답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고 D1에게 2003. 2. 28.까지 그 치료비로 41,053,657원을, 재해보상 합의금으로 3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에 적용되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6조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들고 있다.

[인정근거: 생략]

##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의 법정대리인인 선장인 피고 D3의 총기불법 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물론 피해자 본인인 피고 D1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고를 정상적인 어로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바꾸어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피고 D1이 원고 회사로부터 보험금 73,053,657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 D1은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고, 피고 D3은 피고 D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원고의 지급보험금 상당액만큼 소멸되는 부당이득을 하였으며, 피고 D4는 피고 D3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D1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상금 지급채무 및 불법행위자인 피고 D3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채무가 원고의 지급보험금 상당액만큼 소멸하여 부당이득 하였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가.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고 원고 회사가 보험사고를 조사할 때 알렸던 보험사고가 이 사건 사고와 다른 허위의 사고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에 적용된 원고 회사의 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 원고 회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약관규정은 상법 제659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속하며, 이와 같은 보험사고는 인위적인 사고로 불확정적인 위험의 합리적인 분산이라는 보험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사의 면책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면책이 허용되는 범위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배상책임을 면하는, 즉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는 자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 D3이 위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선적항 이외에서 항해에 필요한 재산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 그를 피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본다거나 배상책임을 면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아 관련하여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오히려 갑1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3 역시 이 사건 보험에서 부보한 근로자 중의 한 명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D3의 행위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그의 법정대리인의 행위로 보아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는, 위 면책약관의 조항을 문언 그대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사소한 법령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령위반 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 혹은 증가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다.

살피건대, 선장이 주변 해역의 정치상황이 불안정하고 반군이나 해적이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자위수단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중대한 법령위반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총기소지행위를 업무상 재해를 일으킬 위험을 높인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D3의 총기소지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이상,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피고 D1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함을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진      \_\_\_\_\_